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개정 2015.06.10. 부안군 고시 2015-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 낚시어선,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시사항

제3조(영업시간 등)

- ① 전라북도 관할수역 내에서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하절기 (4월1일~10월31일)에는 04시00분부터 22시00분까지로 하며, 동절기 (11월1일~익년3월31일)에는 04시00분부터 20시00분까지로 한다.
- ②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야간항해가 가능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4의3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정성 검사 확인을 받은 낚시 어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영업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갯바위 낚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영업시간에 불구하고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낚시어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4의3에 의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낚시어선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의 제한 및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 ① 영업구역내의 간출암과 다른 법령 등에서 출입 및 안내금지,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선상 및 갯바위 낚시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터로 안내할 경우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 지시하거나 고시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② 영업구역 내 낚시금지구역 지정(3개소)

구역명	위 치	경위도	사 유
배잠녀 등대	전북부안군 위도면	35°35 ′ 40 ″ N 126°13 ′ 45 ″ E	. 간출암으로 만조시에는 물에 잠기고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 선박의 접근이
갈매녀 등대	전북부안군 위도면	35°36′ 45″ N 126°14′ 40″ E	어려움. . 순간적 파도가 높고 암초로 되어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피 장소가 없음.
사자비위 돌출암	전북부안군 변산면	35°38′ 00″ N 126°27′ 40″ E	. 돌출암으로 저조시 육지와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하나 . 만조시에는 출입로가 단절되어 고립자 발생.

- ③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 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선상낚시와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 안내하였을 경우 낚시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통신기기 작동 이상 여부 확인 등)하고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입항완료 시까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는 술에취한 상태 및 약물(마약 등) 복용 상태 에서 낚시어선의 운항을 금지한다.
- ⑥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증과 승객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⑦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갯바위,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킨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낚시승객과 상호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긴 급사항 발생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 ⑧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시 즉시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준수사항

제5조(승객의 준수사항)

- 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가 전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 ③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 후 승선 하여야 한다.
- ④ 승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4. 영업시간 외 항해요구 및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5. 선상 및 갯바위 등에서 쓰레기 투기·취사·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 하는 행위.

⑤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 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질오염의 방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는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 중 발생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다.

제7조(수산자원의 보호)

- 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승객은 수산 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은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8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 321조의 규정에 및 선원, 승객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전 고시 제2013-91호(2013.11.11.) 는 폐지한다.